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129
----------	-------

발의연월일 : 2026. 7. 23.

발 의 자 : 이상식 · 채현일 · 모경중
임호선 · 황운하 · 복기왕
신정훈 · 이정문 · 정춘생
권칠승 · 박지혜 · 부승찬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사·재판기관이 사건 당사자와 사적 이해관계로 얽혀 있음에도 직무를 강행하는 행위는 사법의 객관성을 저해하고 공권력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중대한 의무 위반임

그러나 현행법상 이를 실효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직접적인 처벌 규정이 미비하여, 법관뿐만 아니라 검사, 사법경찰관 등 수사기관 종사자에 대해서도 제척·기피·회피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제도의 법제화가 요구되고 있음.

이에 법관 및 수사기관 종사자가 제척 사유를 인지하고도 직무를 회피하지 않거나 기피 결정을 위반하여 직무를 수행한 경우를 엄중히 처벌하여 사적 이해관계에 따른 권력 남용을 차단하고, 형사사법의 신뢰를 높여 사법 정의를 확고히 실현하려는 것임(제123조의3 신설).

법률 제 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3조의3(직무제척·회피의무 위반) 법관 및 수사기관 종사자가 제척 사유가 있음을 알면서도 직무를 회피하지 아니하거나 기피 결정을 위반하여 직무를 수행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23조의3(직무제척·회피의무 위반)법관 및 수사기관 종사자가 제척 사유가 있음을 알면서도 직무를 회피하지 아니하거나 기피 결정을 위반하여 직무를 수행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u>